

사형폐지를 위한 열린마당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30주년 기념 -



< 순 서 >

사회 : 이백철 교수(경기대학교 교정학과 교수)

1:30~1:40 개회인사 - 강우일 주고

1:40~2:20 기조강연

菊田幸一(기꾸다 고오이치 · 메이지 대학 법학부 형사법학 교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

2:20~2:30 피해자 가족의 보호와 사형제도

박병식(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교수)

3:00~3:30 사형수의 삶 그리고 죽음

김우성(전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3:30~3:50 나도 한마디 -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3:50~4:00 휴식

4:00~5:00 화해와 사랑을 위한 미사

일시 : 2000년 4월 4일(화) 오후 1시 30분 ~ 5시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사형폐지를 위한 열린마당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30주년 기념 -

< 목 차 >

사형폐지를 위한 열린 마당을 열며	1
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사형폐지 菊田幸一(기꾸다 고오이치) 교수	2
피해자의 보호와 사형폐지 박병식 교수	5
화해와 사랑을 위한 미사 전례	15

* 나의 죽음으로서 사생을 죽여. 내가 마지막이 되길 때까지 애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형폐지를 위한 열린 마당을 열며

흉악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보도를 접하는 우리는 먼저 “저런 죽일 놈이 있나”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런 놈들이 있으니 사형제도가 있어야 해’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정사목위원회는 이번 열린 마당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사형폐지 세미나가 있었지만 대부분 법률적인 접근이 많았고 사형폐지운동이 전문가들의 이론적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을 뛰어넘어 인권과 생명의 차원에서 피해자와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한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범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과 저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사형수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함께 하셨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인 신부님을 통해 그들의 변화된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형장에서 함께 하면서 성직자로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이며, 회개와 화해, 용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얹누르고 있는 미움과 저주, 죄에서 해방되어 참다운 해방을 체험하는 시기인 대희년의 삶이 우리 안에 내리기를 바라며 최고수(사형수)형제가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람이 지면 꽃이 진다는 말이 왠지 서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무성하게 피어 있던 꽃들도 비바람이 치면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죽음 뒤를 따라오는 말처럼 서럽게 들리는지요. 생에 대한 애착 때문일까요.”

자신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의미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월요일 어머님들과 다른 자매님들을 만나고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살고 있었구나”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그래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분들의 선한 모습을 나에게 심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거칠고, 생각은 악하고, 행동은 불손하니 처음 얼마동안은 교회시간만 되면 거북스럽고 양심이 절금절금 하였습니다. 성서를 읽어도 도무지 이해도 안됐구요. 그러나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의 언행과 성서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채워가다 보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은 사후의 것보다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 속의 천국이 더 감미롭다구요.

신부님, 저 같이 뒷골목이나 누비고 다니며 매일 향락에 빠져 흥청망청 살던 놈이 하느님을 알고 뜻밖에도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느님을 알게 된 것이제 스스로의 노력의 결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백정만도 못한 무식쟁이에 불과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은인들로 하여금 저를 시나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삼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젠 저에게 더 이상의 행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인간의 삶으로 되돌아서게 한 최고수라는십자가를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나에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리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사형폐지(요지)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기구타 고오이치(菊田幸一)

1

처음 뵙겠습니다. 본 대회에 초대받아 발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과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아시아를 리드하는 국가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양국은 아직도 사형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인권의 최전선이며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는 국가는 인권이 미숙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인식에서 보면, 사형을 폐지하지 못한 점에서 양국은 아시아를 리드할 진정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 12월 UN에서 사형폐지조약이 성립된 이래, 금년 4월 현재 세계적으로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국가는 105개국에 달합니다. 아직도 나머지 90개국은 여전히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과반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매년 2개국의 비율로 사형폐지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의 현황을 보면 네팔(네팔은 사형폐지조약의 비준국이기도 함)은 1997년에, 그리고 홍콩은 1993년 이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홍콩은 1996년 중국으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사형이 부활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사형이 부활될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사형폐지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1984년 이래 사실상의 폐지국입니다. 이에 반해서 필리핀은 지금까지 23년간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1993년 법률상의 사형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극적인 사형존치국이며,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오히려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지요. 왜 아시아 국가가 사형을 적극적으로 존치시키는지 그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적극적인 사형존치의 근거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사형존치의 근거로 첫째 흉악범죄의 억지력, 둘째 여론의 지지, 셋째 피해자의 감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오늘날에는 근거가 대단히 약합니다.

우선 범죄의 억지력에 대해 살펴 보면 사형이 있든 없든 흉악사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주와 폐지한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주의 예를 들어보면, 텍사는 주는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고 사형집행수도 많은 곳입니다만 살인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탄로된 범인이 체포를 두려워 한 나머지 살인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사형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흉악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景氣)의 변동, 즉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을 때에 증가하는 것이지 사형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의 지지문제입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여론의 지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총리부(總理府)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80%의 국민이 사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UN의 인권규약위원회가 작년 10월 일본정부에 「정부가 여론을 근거로 사형을 유지해서는 안되며, 여론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와 같이, 국가가 노력해야 할 점은 국민여론을 사형폐지로 어떻게 방향을 돌릴 것인가이지 여론의 지지를 근거로 사형을 존치시키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형을 폐지한 모든 선진국들도 사형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설득하여 사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NHK와 변호사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형 대신에 종신형을 선택한다면 사형을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형의 존치근거를 국민여론에서 찾는 것은 위정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감정의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유로 사형을 존치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을 진정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이용하여 사형을 존치시키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자를 사형시킨다고 해서 피해자의 감정이 만족될 리 없습니다. 물론 가족을 살해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감정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과거처럼 복수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사형시키지 않고서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살인자든, 있어서는 안될 사건에 조우(遭遇)했다는 의미에서는 양쪽 모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은 가해자를 사형시키지 않고 살려 두면서 어떻게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심리적 치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색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사형존치의 근거는 모두 허구(虛構)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따라서 향후 어떻게 사형을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3

이론적인 논의는 차치하고 사형제도의 존치는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의 감정으로서 혹은 피해자감정으로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뿌리깊은 감정이 있고 또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을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바다주는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습니다만, 1991년에 ①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② 40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③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④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부가하는 등의 네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에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찬성	사형 유지	모르겠다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31.0	51.6	13.0
40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39.7	46.4	10.7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46.0	42.9	8.9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64.2	26.1	7.3

이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는 시민들이 아주 엄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고, 엄한 형벌을 부과 한다면 굳이 사형제도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회적 배경이 달라도 변치 않는 국민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종신형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가한다면 사형을 폐지하여도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잔혹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또 사형수가 처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종신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형을 폐지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캐나다, 영국 등 모든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대신에 종신형을 채용하고 나중에야 가석방 및 사면을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사형폐지후에 검토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4

최근 일본에서는 종교계가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가 사형폐지에 적극적이어서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침례교연맹 등이 「21세기를 향하여 사형제도폐지를 요구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요청서」를 정부와 의회에 발송하였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많은 승려들이 교회사(敎誨師: 교도소에서 수형자에게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형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9년 4월 천태종(天台宗)이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종파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또 진중대곡파(真宗大谷派: 교토)도 「사형제도를 재검토하고 사형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종파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불교도는 1억명을 넘는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불교계가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은 최초의 일로서 향후 사형폐지에 큰 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계의 성명문에는 공통적으로 사형의 대체성(代替性)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UN의 사형폐지조약도 작용하였겠지만, 국제적으로 사형폐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법의 평등에 반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의 국가들은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모두 종교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에서 사형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의 입장에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밀바탕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형집행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사형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경건한 가톨릭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사실상의 사형폐지, 즉 사형집행의 정지라도 실현하는 데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톨릭계에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확신하며, 특히 일본에게 큰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이미 국내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사형폐지 내지 집행정지가 실현된다면, 싫든 좋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하여 인권문제를 논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형폐지의 선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일본 사형폐지 시민운동단체(NGO)의 선두에 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지하철 사린 독가스사건의 발생과 음진리교의 교조(敎祖)에 대한 재판 등으로 사형폐지운동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3년 「93년 아시아 사형폐지 도쿄선언」을 발표하여 아시아에서 사형폐지 실현을 서약한지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초대를 받아 한국을 방문하여 발표할 기회를 얻고, 또 힘찬 사형폐지운동의 현장을 견문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점을 일본 시민운동(NGO)의 동료에게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년 4월 4일 한국·서울)

피해자의 보호와 사형폐지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박병식(유스티노)

<목차>

1. 서
2.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자
 - (1) 피해자의 감정이란?
 - (2) 제3의 피해자?
 - (3) 가해자의 가족도 피해자
3. 피해자의 보호와 사형
 - (1)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 (2) 피해자의 구제방법
 - (3)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상과 사형
4.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방법
 - (1) 분노의 피로침
 - (2) 피해자 모임의 결성
5. 결어

1. 서

종래의 형사사법은 국가가 피해자를 소추하고 범죄자가 방지하는 「국가 v. 피고인」의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일원인 범죄자는 약자이다. 이에 형사사법절차에서 취급되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인권보장조항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어떠한가? 「국가 v. 피해자」의 구도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최근 피해자의 권리획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피해자학의 입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찰할 경우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사형제도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피해자의 유족이 검찰이나 법원에 범인을 사형시켜 달라고 호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형이 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범인과 그 가족의 진심어린 사죄에 감동받아 감형단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사형이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피해자감정이란 양형인자(量刑因子)의 하나에 불과하며, 피해자 감정이 양형의 판단에 특별히 존중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형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는 존치론자의 가장 유력한 논거의 하나가

되어 왔다. “사형폐지론자들은 가해자인 사형수의 생명을 보호하자면서 피해자의 감정은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에 폐지론자들은 좀처럼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사형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는 존치론자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감정존중은 반드시 사형제도의 존치로 귀결되는가?

본고는 상기한 의문에 답하고자 사형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존중을 내세우는 존치론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자

(1) 피해자의 감정이란?

사형제도를 논할 경우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유족의 감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과제가 된다. 특히 사형존치론자는 폐지론자가 가해자인 사형수의 생명보호를 주장하면서 막상 피해자의 감정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형폐지론자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사형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존치론자의 주장에 대하여 답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를 스스로 찾아내서 목숨을 걸고 보복했던 시대가 있었으며, 오히려 장한 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들에게는 가해자에게 사적으로 보복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사형을 포함한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私刑(lynch)¹⁾이 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감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범인을 죽이고 싶은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이러한 피해자의 감정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가치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라도 요구하고 실제로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나 산재(産災)에 의해 죽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사형을 요구하지도 않는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것도 일정하지 않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감정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사형이 이미 피해자의 감정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도 법제도상 사형이 가능한 범죄와 가능하지 않는 범죄를

1) 미국 버지니아주의 치안판사 린치(W. Lynch: 1742-1820)가 私的裁判權(Lynch's Law)을 행하여 영국을 편드는 왕당파(王党派)를 즉결재판으로 처형한 데에서 유래된다. 미국 남부에서는 노예제도 폐지론자나 도망한 노예를 방조한 자를 민중이 교수형이나 화형에 처한 일이 종종 있었다. 린치의 피해자는 70% 이상이 흑인이었으며 가해자는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 연방법에 의해 처벌을 요구하는 반(反)린치법안은 1968년까지 남부의원의 반대로 수차례 부결되었다.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형은 이미 「본능」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인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형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종교든 이성이든 혹은 피해자의 진정한 사죄에 의한 용서 차원이든 가해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이다.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정의를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복수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 어린 딸을 잃은 것을 대신할 수 없다. 내 딸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가해자를 사형시킴으로써 정당하게 복수했다고 하는 것은 이루 해아릴 수 없는 딸의 생명 가치를 모독하는 것이다. 설사 100명을 죽이더라도 내 딸의 목숨을 메꿀 수는 없다”

1987년 6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이나 가족이 받은 고통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5대4). 파월(Powell) 판사는 「살해당한 사람의 성격, 살해당한 가족의 슬픔에 배심원이 동요하여 자의적·감정적으로 사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형판결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²⁾ 단지 가해자를 중오하기 보다는 범죄 그 자체를 중오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제3의 피해자?

한편, 사형제도를 논할 경우에 우리는 피해자의 감정을 대변하여 가해자를 처형해 달라는 요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제3의 피해자」라고 보는 「제3의 피해자론」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대다수가 사형에 찬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다수를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형에 반대하는 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차별의식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제3의 피해자」론에는 다수론(多数)에 의지하여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집단주의의 측면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TV나 신문 등의 매스컴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어 극형을 부추기며 보도를 접하는 국민은 범죄자의 냉혹성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시민의 분노감정은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감정을 과연 「피해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건 자체를 잊지 못하지만,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민들은 쉽게 사건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을 「제3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2) New York Times, 1987. 6. 16

피해자와 동치(同值)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쇼킹한 사건일수록 크게 보도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저명한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회가 얼마나 떠드느냐에 의해 형량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³⁾

(3) 가해자의 가족도 피해자

다음으로 우리는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형수의 처형은 그 가족에게 깊은 고뇌와 슬픔을 안겨주며, 이러한 감정은 피해자 유족의 감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살인에 의한 피해자 유족의 슬픔을 완화시키기 위해 범죄자 가족의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가해자 가족의 슬픔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겠으나, 육친을 잃는 인간적인 슬픔을 가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이중으로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생명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사형문제를 논한다면, 가해자의 가족도 피해자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동정과 처우를 망각해서는 안되지만, 가해자의 가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을 사형시켜도 (죽은) 내 자식과 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인간에게도 모친이 있고 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형수의 어머니로, 부인으로, 자식으로 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동요되어 착잡합니다.”

3. 피해자의 보호와 사형

(1)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피해자감정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유족의 고통을 구제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같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과해진 사회적 책임이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열의가 없으며, 피해자·유족의 인권이나 유족의 의사의 자유도 없다. 피해자는 증인이나 방청인은 되더라도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증거의 하나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여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3) 「タカーバ」4卷9号(1984年 5月号)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① 사법거래(plea bargaining)에서의 자문, ② 피해자영향 진술서(VIS), ③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견해(VSO), ④ 법정에서의 의견진술(allocation) 등, 피해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⁴⁾ 1982년법에서는 연방의 양형심리에서 피해자영향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반드시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이 아래와 같은 양식의 「피해영향도 진술서」를 작성하여 판결전조사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영향도 진술서

전문

양형을 결정하기에 앞서 법원이 모든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진술서에 자발적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서식은 사건담당 법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1. 이번 사건의 개요를 적어 주십시오.
2. 사건의 결과, 신체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만약에 입었다면 상처의 정도를 답해 주십시오.
3. 상처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였습니까? 만약에 필요했다면 치료의 종류와 기간을 답해 주십시오. 현재도 아픈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4. 현재까지 의사의 치료를 받는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장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용
5. 이 사건에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있었습니까? 만약에 입었다면 그 정신적 영향도를 답해 주십시오.
6. 이 사건으로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치료의 종류, 받은 기간 혹은 앞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간을 답해 주십시오.
7. 현재까지의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의 비용
8. 사건의 결과 생활비를 벌 능력에 영향이 생겼습니까? 만약에 생겼다면 고용에 대하여 능력에 타격을 받은 내용과 정도, 휴직한 날짜를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1994년법에서는 연방법 차원에서 폭력범·성범죄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행하여 가해자의 양형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은 1985년 범죄 및 권한남용의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 즉 국제연합피해자인권선언을 채택하여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동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하도록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요구할 권리,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절차의 경과에 대하여 알 권리, 법정에 출석하여 신문을 받을 권리, 원조를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을 확보받을 권리 등이 담겨져 있다.⁵⁾

(2) 피해자의 구제방법

피해자의 구제란 범죄가 실행된 후 피해자의 신체에 닥치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피해의 회복이라고도 일컬어진다. 피해회복 프로그램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4) A.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2nd ed., Brooks/Cole, 1990

5) 諸沢英道編, 「犯罪被害者」, 現代のエスプリ 336号(1995)

① 손해배상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자의 자비에 의해 형벌을 대체시키거나 금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양형단계에서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지불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구금형 대신에 배상명령이 언도되기도 하며, 버몬트주에서는 시민 5~6명으로 구성된 「지역배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대표와 범죄자가 상호 동의하에 모임을 갖고 범죄자에게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② 조정·화해

범죄자와 피해자가 단지 금전의 수수에 그치지 않고 상호 감정의 교환, 범죄자의 자기책임 감각의 강화, 피해배상의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조정은 경미한 범죄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데에 이용되며, 화해는 사건을 비공식적인 분쟁으로 보고 배상하게 하는 간이절차이다.⁶⁾

독일에서는 1994년 11월 “범죄대책법”에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공의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공의법인에 자원봉사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보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법관이 관찰하여 설령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상정적인 화해”로 인정하고 있다.

③ 피해자보상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법률에 따라 금전을 지출하는 제도이다. 196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유럽국가에서 창설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모든 주가 금전보상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일본은 1980년에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지급제도」(犯罪被害者等 紙付金支給制度)가 출발하였으며,⁷⁾ 우리나라도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⁸⁾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격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6) 朴元奎/藤本哲也, 「アメリカ合衆国における被害者学」, 比較法雑誌 27卷1号(1994)

7) 일본의 이 제도는 외아들을 노상강도에게 살해당한 부친이 “범인을 잡아서 양값음을 해달라”는 아들의 유언에 따라 범인이 법원에 연행되는 법정의 복도에서 숨겨온 칼로 범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험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대표하여 국가에 의한 피해자배상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한다. 菊田幸一, 「死刑: その虚構と不条理」, 三一書房, 1988, p.61 이하 참조.

8)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동법 제3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구조금과 장해를 입은 경우의 장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동법 제4조 1항).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피해구조금액은 영국처럼 사회보장적 성격이 아니라 위로금의 성격이 강하며, 금액도 유족구조금 1천만원, 1급장해 600만원, 2급장해 4백만원, 3급장해 300만 원(동법시행령 제12, 13조)인 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의한 강제보험의 보상액 정도로 구조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보상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민사배상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소송의 형식으로 범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자력(資力)이 없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마치 돈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주저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나 유족 중에는 범죄의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사죄를 이끌어내려는 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 증거수집 등의 곤란 등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 결과 재판이 대폭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⑤ 관계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

형사사법은 criminal justice의 번역으로서 범죄자사법(犯罪者司法)을 내용으로 하며, 거기에는 피해자사법(被害人司法: victim justice)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⁹⁾ 근래 피해자사법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형사사법에 피해자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제3의 길로서 재정적인 의미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범죄자,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려는 관계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¹⁰⁾

형벌에 기초를 둔 응보적사법(retributive justice)이나 범죄자의 치료적 처우에 기초를 둔

9) 守山正/西村春夫, 「犯罪学への招待」, 日本評論社(1999), p.178

10) 관계회복적사법에 대해서는 G. Bazemore and M. Umbreit, "Rethinking the Sanctioning Function in Juvenile Court: Retributive or Restorative Response to Youth Crime", Crime and Delinquency 41-3, p.296-316, 1995; K. Daly,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orative and Restorative Justice", A Paper presented at "Restorative Justice and Civil Society" Conferenc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Feb. 16, 1999; Van Ness and K. H. Strong, Restoring Justice, Anderson Pub., 1997; H. Zehr, Channing Lense, Herald Press, 1995 참조.

분배적사법(distributive justice)은 범죄자의 행위에 주목하고 피해자의 사법절차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관계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은 범행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결과에 주목하고 배상과 사회복귀의 과정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아래의 표는 응보적사법과 관계회복적사법의 차이를 대비시킨 것이다.

응보적 사법	관계회복적 사법
1 비난의 확정이 목적	분쟁해결이 목적
2 과거에 초점을 맞춤	장래에 초점을 맞춤
3 투쟁모델(소추와 방어)	표준적 직접대화
4 지역사회가 방관자 역할	지역사회가 관계회복의 촉진자 역할
5 범죄자에 대한 제재는 응보	범죄자에 대한 제재는 보상
6 피해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정보를 전달
7 피해자의 '진실'은 2차적	피해자에게 진실을 고백할 기회 부여
8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독점	피해자, 범죄자, 지역사회의 역할 중시
9 개인적인 비난과 배제의 의식(儀式)	참회와 재출발, 용서의 의식(儀式)
10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결합 약화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융합 증가
11 범죄자의 과거행동에 기초한 대응	범죄자의 행동결말에 기초한 대응
12 승(勝)과 패(敗)의 관계 예정	승(勝)과 승(勝)의 관계 가능
13 법률전문가는 대리인	법률전문가는 원조자(범죄자·피해자가 주역)

(3)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상과 사형

이처럼 피해자의 구조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상은 피해자의 감정과 관련하여 사형폐지론자도 사형회피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경우,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죄했는지 아니면 단지 사형을 회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만 사죄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의 보상의 경우에도 유족의 경제적인 손실과 범죄의 보상으로서 위자료지불을 법원이 양형에서 평가하는 것은 가해자의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안기는 「가족형」(家族刑)의 측면이 있으며, 가해자의 가족이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자산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사형판결이 내려지는 등 자산의 유무가 생사(生死)를 가르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¹¹⁾

한편, 사형과 관련하여 향후의 피해자대책은 금전적인 구제로부터 정신적인 지원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은 폐지론자는 물론 존치론자의 경우에도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결과 고립되어 있으며, 자신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

11) 荒井彰, 「被害者への謝罪と死刑廃止」, 『死刑の現在』, 日本評論社, 1990, p.99

는 죄악감에 싸여 있다. 미국의 경우, 자식이 죽음을 당한 부부의 70%가 자식의 유품을 그대로 남기자는 의견과 하루 빨리 잊기 위해 없애자는 의견이 충돌하여 이혼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4.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방법

(1) 분노의 피뢰침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은 사형폐지론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결국 사형존치론의 마지막 논거인 피해자 감정론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사형폐지운동가는 「적(敵)」으로 간주되기 쉬우며, 따라서 사형폐지운동가가 피해자 유족의 대화상대 내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막상 대화상대가 되었다고 해도 피해자 유족들이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영화 「데드맨 워킹」의 헬렌수너는 자원봉사자에게 유족의 분노에 반응하지 말고 「피뢰침(避雷針)」 역할에 충실히라고 충고한다. 슬픔을 치유하는 최초의 단계에서는 슬픔을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증오심을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를 "용서하자"고 권유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공감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유족들의 슬픔과 한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증오가 유족들의 삶에 있어서 에너지 역할이 되기 때문이다.¹²⁾

(2) 피해자 모임의 결성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은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같은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들의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한다.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은 유족으로 하여금 저주, 분노, 기도 등 어떤 행위를 해도 좋다는 안심감을 부여한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이 경우에 신문 등에서 살인사건의 기사를 검색하여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유족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와 함께

12) 피해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회」(MVFR)와 「SOLACE」는 사형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자기소개를 하고 후일 방문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대화를 꺼릴 때에는 “이번 사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지거든 연락을 달라”면서 명함을 건낸다.

그리고 모임의 날짜를 알고 있으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는가? 모두가 기다렸다”라고 전한다. 피해자의 고통치료와 분노의 컨트롤을 위해 정신과의 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5. 결어

사형존폐론은 자칫하면 존치론과 폐지론의 “힘겨루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단순한 「운동」이나 「철학의 주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다. 우리가 논하는 대상은 「가상의 피해자」나 「가상의 가해자」가 아닌 인간 그 자체이며, 따라서 사형존폐론도 「가상의 존치론자」나 「가상의 폐지론자」가 아니라 서로 만나 현실을 바꿔가기 위한 협력을 짜내는 실제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형을 인간문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만들고 있으며, 제도로 모든 것을 해결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언제 죽음의 사자가 찾다들지 모르는 초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사형수」와 그들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으며, 그들은 공히 고독과 죄악감, 증오심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들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내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제도」로 접근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제도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제 관념적으로 피해자의 감정이나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의 지원과 살아있는 생명체의 보호를 위한 노력에 착수할 때이다.

화해와 사랑을 위한 미사 전례

교회 통

오늘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제도적인 죽음 즉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전문가와 뜻을 같이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끔찍스러운 악을 몸소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인간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용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정의는, 범죄자를 처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자신의 파괴적 의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응징의 논리정연한 정의가 감히 해낼 수 없는 것을 자비와 용서는 능히 해낼 수가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혜를 청하고 더 이상 사형이 없는 세상,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작성가 : 472

참회예절

+ 주님, 저희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소중하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는 형제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단죄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 그리스도님, 새로운 마음을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 출소자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보다 더 차갑고 힘겨운 사회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다시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소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없이, 두려운 존재는 피하거나 무관심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소서

+ 주님, 지금도 범죄의 피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거나 두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당신을 알면서도, 실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 성가 : 226, 1~3

본기도

주님, 사랑은 용서이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때마다 십자가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심으로 참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 역시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참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독서 : 에페소서 4:25-32

화답송 : 빛의 사람들 126(새로운 계명)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 마태오 18:19-22

강론 : video 상영

보편지향기도

1.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하여

2. 가해자들의 참회화 화해를 위하여

3. 사형제도로 죽은 이 땅의 모든 사형수들의 영혼을 위하여

봉헌 : <찢겨진 Heart 그림을 봉헌하고 꽃다발을 찢겨진 Heart 위에 봉헌한다.>

해설 :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미움으로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창조주 하느님을 포기했기에, 우리는 자기자신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 더 이상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갈라진 마음을 그대로 꽃과 함께 봉헌합니다.

봉헌성가 : 510

예물기도

주님, 이 구원의 예물로 저희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자신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 더 이상 올바른 관계를 만들지 못하여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그래서 분열과 불신으로 가득찬 우리의 모습을 봉헌하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참 생명으로 변화시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구원과 참된 평화를 이룩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주님의 기도 : 387

평화의 인사 :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시듯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잠시라도 마음에 원한을 품는 일 없이 즉시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온전히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한 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물에 흘려 보내듯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진정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무례나 모욕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과 접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제 자신도 많은 잘못을 저질러 이웃의 용서를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모쪼록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이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고 제한 없이 용서하는 인내심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웃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시듯 저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트를 합친다.)

(꽃을 나눈다.)

성체성가 : 174, 175

영성체 후 묵상 : 최고수 형제의 편지

<1997년 12월 30일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정은희(미카엘) 형제의 편지 중 일부입니다. 미카엘 형제는 자신의 장기뿐만 아니라 사체까지도 기증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 중에 하느님 품안으로 갔습니다.>

하루종일 가을비가 대지를 적셨거든요.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비를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아픈 날이거든요.

이제서야 비가 그친 듯 합니다.

2년전 오늘. 하느님께서는 이 곳에서만 열 명의 형제들을 데려 가셨답니다. 갑작스럽게도요. 주님은 너무 일찍 예리고 가서 하느님께서 후회하시나 봅니다. 하염없이 비가 내렸었잖아요. 먼저 간 형들의 해맑았던 웃음이 미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답니다. 무척 친했거든요. 눈에 생생하네요! 제 바램이라면 형들 모두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랍니다. 가능하지요?

사형수란 타이틀(?)이 세상에서 겪은 고통을 몽땅 짊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카엘도 겪고 있지만 먼저 간 형들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겪었을 테니 하느님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한답니다.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이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이니 기대를 가져 볼까 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용서와 화해의 표시로 받아 모신 성체성사의 은혜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자유롭게 되어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신명나는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오시옵주 하나님 중 향사용 을듯 종모 전부로으음과 전마이 전로으음
우리주 예수... 오시옵주 하나님 중 향사용 향사용 모임 전부 음향과 전마이 향사용
마침성가 : 빛의 사람들 98(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기도 : 평화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좀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